

의안번호	2201441
의 퇴 인	백승아 의원
회 답 일	2024.07.25.
추 계 번호	24C17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3항)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감은 제2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의무규정
		(제4항)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규정
3	안 제20조의4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제1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제2항)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학생을 인계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교원은 분리조치를 한 경우 분리조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5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계된 학생을 위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항)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분리조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감독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항)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안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안 제20조의4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18조의4)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필요한 기준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움

- 2024년 현재 학교 및 전문기관인 Wee센터(교육지원청),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학생 정서 관련 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음
- 다만,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이 실시 후 발생하게 될 “지원대상학생의 수” 및 필요 상담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이에 기존 기관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또한,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실시될 구체적 학습지원 방안을 예상하기 어려워 관련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추정에도 한계가 있음

□ (안 제20조의2)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긴급 상황의 예방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움

-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근거하여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해설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 2023.9.)를 배포
-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은 동 고시 제12조제4항 전단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시 내용 외에도 “제2항에서 규정한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 마련과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서는 제지의 요건, 지도요령,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할 때 긴급 상황 예방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상세한 매뉴얼 마련 및 인적·물적 지원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 그러나 교육청별·학교별로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안 제20조의4)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과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움

- 교육부가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은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분리조치의 방법에 대하여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고시는 분리방법을 각 호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¹⁾
- 다만, 개정안은 추가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보호자에게의 학생 인계가 어려워 교육청에 학생이 인계된 경우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분리조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는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학교 여건(분리장소, 지원인력, 비상 연락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서술되어 있음
 - －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할 때 분리조치에 따른 인적·물적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감에게로 인계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과 분리조치 지원계획을 위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교육청별·학교별로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라 추가될 사업내용과 예산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